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1월 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전략물자관리팀장 주소령, 방규철 사무관(02-2110-5341)		

지경부, 대학에 전략기술 관리체제 확산에 나선다

- 서울대 자율준수체제 구축 시범사업으로 본격화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국내 대학의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,

○ 2012년 10월 31일 서울대학교에서 지경부 산하 **전략물자관리원과 서울대 간 『전략기술 관리지원 업무 협약식』을 개최함**

○ 또한, 협약식 행사와 함께 서울대학교 연구처장, 서울공대 학장 등 학내 관계자와 전략기술 관리체제 확산을 위한 대학-정부 간 협력방안도 논의함

< 협약식 행사개요 >

◇ 일시·장소 : '12.10.31(수) 17:00, 서울대

◇ 참석 : 지경부 무역정책관, 서울대 연구처장(산학협력단장 겸임)
서울공대 학장, 전략물자관리원장 등 15명

◇ 내용 : 관리지침·절차 수립, 조직 진단·구축, 교육·홍보 등 지원

전략기술은 핵무기,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, 제조 등에 쓰일 수 있는 기술로서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외에 전자, 기계, 소재, 원자력, 화공, 생물공학 등 **일반산업기술 중에서도 해당되는 기술이 다수 존재**

√ UN 등 국제사회는 전략기술의 국가간 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며, 불법 이전할 경우 국제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하여 제재를 부과함

□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전략기술 이전을 통한 국제안보 위협 증가 및 기술의 융복합화, 개방형 기술혁신 등 글로벌 기술교류 확대추세에 따라 전략기술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

○ 주요 선진국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전략기술 관리체제를 구축하고, 국가 R&D 연구과제를 포함한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전략기술의 무형이전*을 엄격히 관리함

* 무형이전(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)이란 회의, 강연 등 구두를 통한 이전과 이메일,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등 정형화되지 않은 기술이전을 의미

○ 우리나라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른 **전략기술의 무형이전(ITT) 관리지침의 국내 법제화 및 이행이 시급**한 실정임

* 현재 우리나라도 ITT관리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

□ 금번 시범사업은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략기술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,

○ 전략물자관리원은 서울대의 학내 전략기술 관리를 위한 **내부지침 및 이행절차 수립을 지원**하고,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**교육·홍보**를 통해 인식을 높이는 등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할 계획임

○ 지식경제부는 금번 서울대 시범사업이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강조함

참고 **전략기술 관리제도 개요**

□ 전략기술의 개념

○ 전략물자*의 개발, 생산 또는 사용 등에 필요한 기술로서 국제안보 및 테러방지 등의 목적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이전을 통제하는 기술

* 전략물자 : 대량살상무기(WMD)와 그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이들 무기의 제조·개발·사용 등에 이용 가능한 품목(기술·물자·소프트웨어)

<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기술 >

구분	통제기술	예시
바세나르협정 (WA)	–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기술	자동차 생산용 공작기계 개발 기술
호주그룹 (AG)	– 화학물질, 전구체 또는 이중용도 제조시설 및 장비 관련기술	백신 약품 제조 기술
핵공급국그룹 (NSG)	– 원자력 전용품목 및 이중용도 전략물자 관련기술	원자로 설계 기술
미사일통제체제 (MTCR)	– 미사일과 미사일 제조시설, 장비 및 부품 관련기술	인공위성 발사체 제조 기술

* 단, 허가된 물품의 설치, 작동,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, 일반에 공개된 정보,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정보 등은 통제대상에서 제외

□ 전략기술 관리제도 개요

○ **(관련법령)** 대외무역법, 대외무역법시행령, 전략물자수출입고시

○ **(판　　정)** 전략기술 해당여부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

○ **(수출허가)** 전략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을 해외 또는 외국인에게로 이전 시 사전허가 필요

○ **(상황허가)** 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

○ **(벌　　칙)** 수출허가 등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의 벌금과 3년 이내 무역제한